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지원관의 운용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고, 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맞추어 인사·조직관계 조항을 정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의 직무와 배치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여 인력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제7조(시행규칙)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3조(하부조직)를 삭제함으로써 조직관계 조항의 체계 정합성을 강화하고,

셋째, 의장의 시장에 대한 근무지원 요청 조항인 제6조(직원의 근무지원 요청)를 삭제하여 인사권 독립의 취지에 맞도록 인사관계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본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고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조례개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